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24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 오영환·한준호·신현영

이수진 · 임오경 · 이성만

주철현 · 김민철 · 임호선

홍성국 · 김병주 · 정청래

이용우 · 최혜영 · 장경태

장철민 · 김남국 · 이규민

이원택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

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6조제 1항).

법률 제 호
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 ·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상시 개호(介護)"를 "상시 간병"으로, "치료·개호"를 "치료·간병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의료지원금) ① 5·18민주	제6조(의료지원금) ①
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	
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	
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	
료가 필요하거나 <u>상시 개호(介</u>	<u>상시 간병</u>
護) 또는 보장구(補裝具)의 사	
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치</u>	
료·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	<u> 치료·간병</u>
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	
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